

## 집합투자기구 정정

- 대상투자신탁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대상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변경내용 : 법령개정 사항 반영, FATCA 관련 유의사항 추가,  
집합투자업자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투자신탁 일부해지시 보수 인출 추가
- 변경대비표(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FATCA관련 유의사항 추가	<u>9. &lt;신설&gt;</u>	<u>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
<b>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6. 투자실적 추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u>작성기준일:2015.06.12</u>
<b>II. 매입·환매 관련 정보</b>			
2. 과세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 <u>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u> )을 부담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 <u>개인 및 법인 15.4% 원천징수</u> )을 부담합니다.
<b>III. 요약 재무정보</b>			
1. 재무정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u>작성기준일:2015.03.13</u>

- 변경대비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변경	<u>9. &lt;신설&gt;</u>	<u>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u>

			<p><a href="#">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a></p>
	FATCA관련 유의사항 추가	10. <신설>	<p><a href="#">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a></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	사옥이전에 주소변경	따른	<p><a href="#">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a></p> <p><a href="#">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6층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신관)</a></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세법 개정사항 반영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b>-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b>주민세 3.8%</b>)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b>-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b></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b>지방소득세 1.4%</b>)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 소득(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최고한도 세율 38%, <b>지방소득세 3.8%</b>)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p>

		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a href="#">작성기준일:2015.03.13</a>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a href="#">작성기준일:2015.03.13</a>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현황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 href="#">작성기준일:2015.06.12</a>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현황 <a href="#">작성기준일:2015.03.13</a>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가. 회사개요 - 주소 및 연락처 <a href="#">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a>	가. 회사개요 - 주소 및 연락처 <a href="#">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6층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신관)</a>
	결산기 반영 재무내용 업데이트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a href="#">작성기준일:2014.12.31</a>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a href="#">작성기준일:2015.06.12</a>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사항 반영 (2015.01.01 시행)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b>&lt;신설&gt;</b>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b>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b>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	-----------------------------------

□ 변경대비표(집합투자계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9조(보수)	일부해지시 보수인출 추가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 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개정>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 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u>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u>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①, ②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신설>	①, ② <현행과동일>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u>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법령개정(2015.01.01 시행)사항 반영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ol>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b>5. &lt;신설&gt;</b></p> <p>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ol>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b>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p> <p>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p>
--	--	--

기 타 :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